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0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포함(임광현의원안)	3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1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20.
- (3) 회 부 일 : 2024. 9.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

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포함(임광현의원안)

현 행	임광현의원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 제1호)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유치원, 초·중·고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대학수능 응시료 -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등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신 설> ☐ 세액공제율: 15% ☐ 공제한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원/명 - 대학생: 연 900만원/명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포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임광현의원안 2024. 9. 20. 제출(의안번호 4109)

☐ 개정안은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각급학교, 평생교육시설, 국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되고 있는데,

동법¹⁾에서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안교육”을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 231개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시·도 교육청별 대안교육기관 등록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7	9	6	7	10	7	2	1	5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4	7	3	9	10	7	6	231

자료: 교육부

□ 대안교육기관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첫째,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므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또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규학교 교육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이를 대체하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

둘째, 「초·중등교육법」²⁾에 따른 ‘대안학교’의 경우 세액공제 대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상에 포함되는데,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의견은 있을 수 있음.

대안교육기관은 정규학력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 구현³⁾이라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제도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또한, 정규학력 취득이 불가능한 미인가 대안학교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로 정한다.

3)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